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덕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PSPD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담당 기자  
발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담당간사 김형완 사무국장 796-8364)  
제목 김현철사건관련기업인 고발장 접수 및 한보관련정치인 고발촉구서한 발송  
날짜 1997. 5. 23. (총 9 쪽)

## 보 도 자 료

### 김현철씨에게 돈 준 기업인들 횡령죄로 고발 한보관련 정치인에 대한 국세청 고발조치 촉구

1997년 5월 23일 (금)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 접수  
국세청장 앞으로 증여세포탈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 촉구서한 발송

###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인 6인에 대한 횡령죄 고발

지금까지 많은 부정비리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과 함께 돈을 준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 형평에 맞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김현철씨와 관련하여 이권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을 비롯한 6명의 기업인에 대하여 수억원의 돈을 김현철씨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결의한 전제 거치지 않은 채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돈을 임의로 집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대표고발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사무국장 김형완 796-8364)

고발장 접수는 5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별첨>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6인에 대한 고발장 전문

### 한보관련 정치인에 대한 국세청 고발조치 촉구서한 발송

1. 지난 5월 22일 한보관련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은 김수환 국회의장과 신한국당의 김윤환, 김덕룡 의원 등 24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여

세를 추징토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포탈세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의 고발조치로 처벌이 가능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고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러한 '떡값' 명목의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에 대해 아무런 규제나 처벌이 없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3. 그러나 이번 한보비리사건을 계기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드높은 시점에 이같은 권력형비리사건에 대해 단순히 증여세의 추징에만 그친다면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정당치 못한 금품수수관행을 척결하는데는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이번 한보비리와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정식고발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국세청은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

<병침> 촉구서한 전문

# 고 발 장

고 발 인 김 형 완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8364

이 태 호

주소, 전화번호 : 위와 같음

- 피 고 발 인
1. 이 성 호 (전 대호건설 사장)
  2. 김 덕 영 (두양그룹 회장)
  3. 최 승 진 (우성그룹 전부회장)
  4. 신 영 환 (신성그룹 회장)
  5. 곽 인 환 (대동주택 회장)
  6. 조 동 만 (한솔그룹 부사장)

고발인들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속 회원들로서 최근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을 알선수재와 조세포탈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이권청탁 및 활동비 명목으로 김현철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책임자로서 그 기업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명백한 바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정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발의 취지

정치인과 기업간의 뿌리깊은 유착이 그 몸체를 드러내어 수십명의 정치인들이 검찰에 소환되고 기소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청탁의 대가로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까지 하니,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고리는 어디에서부터 끊어내야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의당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권력자, 정치인과 공무원들 모두가 엄정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기업인들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때 이권과 관련되

어 특수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뇌물과 청탁을 일삼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  
치입니다.

게다가 기업인들이 정치인과 공무원, 권력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거의 모두가 음성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검은 돈이므로 세무당국에서 통보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이고, 한 기업의 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기업의 돈을  
마치 개인의 돈인 양, 수천만원, 심지어는 수억원의 돈을 청탁의 대가로,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제  
공하는 행위는 자신의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까.  
더구나, 위와 같은 검은 돈을 받은 자만 처벌하고 그 제공자를 불문에 붙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며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맞지 아니합니다.

고발인들은 김현철씨와 관련하여 수사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의 횡령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  
며, 돈을 준 피고발인들은 분명히 이윤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처벌없이 정경  
유착과 뇌물수수의 관행이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한보비리와  
같은 정경유착의 병폐가 거듭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  
에 처벌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 2. 범죄사실

- (1) 피고발인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은 1993년 12월부터 1995년 12월 사이에 서초케이블TV 사업  
자로 선정되도록 공보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전후 26회에 걸쳐 합  
계금 17억 2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김현철에게 제공하고,
- (2) 피고발인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은 1993년 5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6천만원씩 20회에 걸쳐 12  
억원, 1995년 4월에 신한중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 피고발인의 장인인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과의  
소송에서 이길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억원 합계금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김현  
철에게 제공하고,
- (3) 피고발인 최승진 우성그룹 전 부회장은 1993년 4월부터 1993년 10월 사이에 3회에 걸쳐 6천만  
원씩 합계금 1억8천만원을,
- (4) 피고발인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은 1993년 6월부터 1995년 11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6천만원씩  
합계금 6억원을,
- (5) 피고발인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은 1994년 6월부터 1996년 12월 사이에 31회에 걸쳐 5천만원씩  
합계금 15억5천만원을,
- (6) 피고발인 박인환 대동주택 회장은 95년 6월에 합계금 10억원을 지자체 선거활동비 등 활동비로  
제공하여서 각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1억8천만~17억2천만원까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김현철씨에게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자금의 조성경위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등의 의결절차, 경과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인 회사기구에서도 이러한 엄청난 금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의 지  
급을 용인하는 의결을 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부정한 자금의 조성은 통상적인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겠지만 회사의 각종 자금에서 빠져나왔을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회사에 유보되어야 할 정당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 3. 결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대통령의 아들까지 망라된 이번 권력형 비리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업가에서부터 청와대에까지 짙은 불신의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고발인들의 횡령죄에 대해서도 마땅히 엄정하고도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발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계좌이동과정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 거래된 모든 내역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대선자금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속 기소된 김현철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수사를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번 고발전에 대한 검찰의 처리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입니다.

1997. 5. 23.

위 고발인 김 형 완 (인)

이 태 호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김창덕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PSPD

문서번호    참연-97-503  
수    신    국세청장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담당 김형완 사무국장 796-8364)  
제    목    한보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촉구서한  
날    짜    1997. 5. 23. (총 2 쪽)

## 한보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촉구서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는 2천여명의 시민회원과 1백여명의 법조인, 3백50여명의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부패방지법제정, 소액주주권익보호, 의정감시·사법감시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정경유착과 부정비리의 전형적 사건인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5월 22일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문정수 부산시장 등 8명의 정치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와 사전수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고, 김수한 국회의장과 신한국당 김윤환, 김덕룡 국회의원 등 24명에 대해서는 귀청에 통보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3. 검찰이 김현철씨에 대하여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한 것은 김씨가 포탈한 증여세액이 13억5천만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크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돈세탁을 하는 등 세원포착을 고의로 어렵게 하였으므로 당연하고 마땅한 처사라고 봅니다. 아울러 검찰이 모든 불로(不勞)소득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처리방침을 명확히 한 점 역시 타당한 처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포탈세액이 2억원 미만일 때는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는 소위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정치권으로 유입된 수 많은 검은 돈의 거래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나 규제가 없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포탈세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한보사건에서 정치인들이 받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에 대해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행위

는 분명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발표와 같이 단순한 증여세의 추징만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귀청의 고발조치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만 비로소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당하지 못한 금품수수관행이 척결되고, 공평한 조세행정을 통한 조세정의가 확립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5. 1993년 미국대통령의 취임한 클린턴은 예일대 법대 교수로 근무하던 베어드를 법무부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의 취재결과 베어드교수는 불법이민자부부를 고용하여 그 남편은 운전기사로, 그 부인은 가정부로 일하게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 불법이민자부부에게 지급한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소하다고 할지도 모를 이 문제로 베어드 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지만 귀감이 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국가의 원활한 행정기능과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서나 경제정의를 위해 귀청이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한보사건을 비롯한 부정부패사건에서 법망을 피해 새어나가는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에 귀청의 역할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귀청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기대하며, 앞으로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국민의 국세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